

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8,520,000	19,155,600
일반회계		605,400,000	18,162,000
특별회계		33,120,000	993,6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87,000	26,61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4,000	3,7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260,000	157,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	1,2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51,000	55,5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1,800
	치수사업특별회계	340,000	10,2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93,000	170,7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865,000	565,9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495,91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